PRUGIO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3-3BL)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15.09.11)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임) ▣ 당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소유주택 수"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 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9.11)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9.11)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및 85㎡초과로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분양권 전매제한	구분	분양권 전매제한
전용 85㎡ 이하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	전용 85㎡ 초과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

– 용인시 구갈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10.05)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prugio.com)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 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분양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 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30257(2015.09.1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 3-3블록(구갈동 234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층~40층 5개동, 7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236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6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9세대, 노부모 특별공급 2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공급면적 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계	기타공용	주차장면적	지하공용	소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일반공급
민영주택	2015000957-01	73.550A	73A	73.550	28.005	101.555	4.164	33.872	1.150	39.186	140.741	20.100	114	11	11	11	3	78
	2015000957-02	73.476B	73B	73.476	28.452	101.928	4.160	33.838	1.148	39.146	141.074	20.198	37	4	4	4	1	24
	2015000957-03	73.834C	73C	73.834	28.154	101.988	4.180	34.003	1.154	39.337	141.325	20.187	37	4	4	4	1	24
	2015000957-04	84.984A	84A	84.984	32.643	117.627	4.811	39.138	1.328	45.277	162.904	23.295	144	14	14	14	4	98
	2015000957-05	84.968B	84B	84.968	32.149	117.117	4.810	39.131	1.328	45.269	162.386	23.169	126	13	13	13	4	83
	2015000957-06	84.923H	84H	84.923	32.268	117.191	4.807	39.110	1.327	45.244	162.435	23.191	20	2	2	2	1	13
	2015000957-07	84.980C	84C	84.980	31.738	116.718	4.810	39.136	1.328	45.274	161.992	23.069	142	14	14	14	4	96
	2015000957-08	84.963D	84D	84.963	31.951	116.914	4.810	39.129	1.328	45.267	162.181	23.119	71	7	7	7	2	48
	2015000957-09	114.516	114	114.516	42.251	156.767	6.483	52.739	1.790	61.012	217.779	30.957	69	–	7	–	2	60
	2015000957-10	123.855P	123P	123.855	47.308	171.163	7.012	57.040	1.936	65.988	237.151	33.884	2	–	–	–	–	2
	2015000957-11	124.227P	124P	124.227	48.393	172.620	7.034	57.211	1.942	66.187	238.807	34.221	2	–	–	–	–	2
	2015000957-12	149.918P	149P	149.918	58.686	208.604	8.488	69.043	2.344	79.875	288.479	41.369	4	–	–	–	–	4
계													768	69	76	69	22	5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전용면적	동, 라인	공급세대수	층 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금 계약시	계약금 계약후 1개월內	1차중도금 10% 2016-03-07	2차중도금 10% 2016-07-05	3차중도금 10% 2016-12-05	4차중도금 10% 2017-05-08	5차중도금 10% 2017-09-05	6차중도금 10% 2018-02-05	잔금 30% 입주지정일
73A	73.550	105동 1,3,4호	114	2층	3	124,323,300	196,676,700	–	321,000,000	10,000,000	2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300,000
				3층	3	128,196,300	202,803,700	–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4층	3	131,294,700	207,705,300	–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5~9층	15	134,005,800	211,994,200	–	346,000,000	10,000,000	2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10~19층	30	135,942,300	215,057,700	–	351,000,000	10,000,000	2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105,300,000
				20~29층	30	138,266,100	218,733,900	–	357,000,000	10,000,000	2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30층이상	30	140,202,600	221,797,400	–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73B	73.476	105동 2호	37	3층	1	127,034,400	200,965,600	–	328,000,000	10,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4층	1	130,520,100	206,479,900	–	337,000,000	10,000,000	2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01,100,000
				5~9층	5	132,843,900	210,156,100	–	343,000,000	10,000,000	2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10~19층	10	135,167,700	213,832,300	–	349,000,000	10,000,000	2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20~29층	10	137,491,500	217,508,500	–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30층이상	10	139,040,700	219,959,300	–	359,000,000	10,000,000	2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107,700,000
73C	73.834	105동 5호	37	3층	1	128,196,300	202,803,700	–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4층	1	131,294,700	207,705,300	–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5~9층	5	134,005,800	211,994,200	–	346,000,000	10,000,000	2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10~19층	10	135,942,300	215,057,700	–	351,000,000	10,000,000	2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105,300,000
				20~29층	10	138,266,100	218,733,900	–	357,000,000	10,000,000	2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30층이상	10	140,202,600	221,797,400	–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84A	84.984	101, 102, 103, 104동 1호	144	2층	1	140,589,900	222,410,100	–	363,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3층	4	144,850,200	229,149,800	–	374,000,000	10,000,000	2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112,200,000
				4층	4	148,335,900	234,664,100	–	383,000,000	10,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5~9층	20	151,434,300	239,565,700	–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10~19층	40	153,758,100	243,241,900	–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20~29층	40	156,469,200	247,530,800	–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30층이상	35	158,405,700	250,594,300	–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84B	84.968	101, 102, 103, 104동 2호	126	2층	3	139,815,300	221,184,700	–	361,000,000	10,000,000	2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3층	4	144,075,600	227,924,400	–	372,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4층	4	147,561,300	233,438,700	–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5~9층	20	150,659,700	238,340,300	–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10~19층	40	152,983,500	242,016,50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20~29층	40	155,307,300	245,692,700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30층이상	15	157,631,100	249,368,900	–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84H	84.923	101,102,103,104동2호	20	30층이상	20	158,018,400	249,981,600	–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84C	84.980	101, 102, 103, 104동 3호	142	2층	3	141,364,500	223,635,500	–	365,000,000	10,000,000	2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09,500,000
				3층	4	145,237,500	229,762,500	–	375,000,000	10,000,000	2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4층	4	149,110,500	235,889,500	–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5~9층	20	151,821,600	240,178,400	–	392,000,000	10,000,000	2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10~19층	40	154,532,700	244,467,300	–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20~29층	40	156,856,500	248,143,500	–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30층이상	31	159,180,300	251,819,700	–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84D	84.963	101, 102동 4호	71	3층	2	142,913,700	226,086,300	–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4층	2	146,399,400	231,600,600	–	378,000,000	10,000,000	2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13,400,000
				5~9층	10	149,110,500	235,889,500	–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10~19층	20	151,821,600	240,178,400	–	392,000,000	10,000,000	2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20~29층	20	154,145,400	243,854,600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30층이상	17	156,081,900	246,918,100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114	114.516	103, 104동 4호	69	2층	1	186,834,600	296,514,000	29,651,4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3층	2	192,297,600	305,184,000	30,518,400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4층	2	197,032,200	312,698,000	31,269,80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5~9층	10	201,038,400	319,056,000	31,905,600	552,000,000	10,000,000	4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10~19층	20	204,316,200	324,258,000	32,425,800	561,000,000	10,000,000	4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20~29층	20	207,594,000	329,460,000	32,946,000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30층이상	14	210,143,400	333,506,000	33,350,600	577,000,000	10,000,000	4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173,100,000
123P	123.855	101, 102동	2	30층이상	2	293,545,200	465,868,000	46,586,800	806,000,000	10,000,000	7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241,800,000
124P	124.227	103, 104동	2	30층이상	2	296,094,600	469,914,000	46,991,400	813,000,000	10,000,000	7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243,900,000
149P	149.918	101,102,103,104동	4	30층이상	4	357,644,400	567,596,000	56,759,600	982,000,000	10,000,000	8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294,60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저층 우선배정 세대는 총 21세대(2층 11세대, 3층 10세대)로 1~2층은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윗층인 2~3층을 최저층으로 함.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적정리와 대지면적 확정 및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납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로 대지 등기는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 이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하여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 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일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재직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배우자 소득증빙 가능시 배우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세대원	접수 장소에 비치(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3) 가구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판매가	비고
84A, B, H, C, D, 114	현관중문(슬라이딩 or 여닫이)	770,000	
전주택형(73A, B, C, 84D 제외)	침실 붙박이장(여닫이)	1,100,000	한샘
114	거실주방바닥재(폴리싱타일)	3,300,000	

▣ 마이너스 옵션 제도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거실, 주방, 식당, 복도, 안방, 침실, 드레스룸 〈타일,천연석〉현관, 현관창고 〈타일〉발코니(다용도실 포함), 대피공간바닥, 실외기실바닥, 발코니바닥 배수구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 조명등기구	매입조명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젠다이(천연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구,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TV폰,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3구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싱크절수기	설비배관, 전기,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현관창고장 포함), 복도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 가구도어,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세탁실수전, 발코니수전, 세탁선반, 전동빨래건조대	홈네트워크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일괄소등스위치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구분(주거전용면적)	73A	73B	73C	84A	84B	84H	84C	84D	114	123P	124P	149P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22,866,000	22,950,000	22,963,000	26,484,000	26,369,000	26,386,000	26,280,000	26,324,000	36,519,000	39,873,000	40,212,000	46,999,000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3.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 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품목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시공되지 않음.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5.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품목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6.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7.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품목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등록 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8.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9.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 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10.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11. 마이너스 옵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12.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13.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14.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5.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16. 마이너스 옵션 계약 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7.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 제2항, 제3항 적용)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절수 설비	적용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보증약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사)	시공사	위탁사
상호	한국자산신탁(주)	(주)대우건설	(주)피데스피엠씨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삼성동, 조양빌딩 4층)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2137895	110111-3613050

▣ 홈페이지 : http://www.prugio.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43번지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분양문의

1899-8082

올리올리자
수지점
죽전휴게소
죽전초등학교
견본주택
죽전동성1차아파트
수지체육공원
수지레스피아
수지동보1차아파트
풍덕천사거리
죽전역
용인
문정중학교
롯데마트
분당선